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39231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5. 11. 28.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전인권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3.10.17.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4. 12. 5.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이희도	목적물 전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임차권		190,000,000		2021.09.06.	2021.08.17.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이희도)	목적물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1.09.05.~ 2023.11.10.	190,000,000		2021.09.06.	2021.08.17.	2024.12.03.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매신청권자로 임차인 이희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우선변제권 승계). 계약서상 점유기간은 2021.09.05.~2023.09.05.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1번 주택임차권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전입일 2021.09.06. 확정일자 2021.08.17.).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없음										
비고란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희도)로부터 2025.05.07.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약서가 제출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39231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375-61

송정다울3차

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119-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

1층 20.44㎡

2층 136.34㎡

3층 136.34㎡

4층 136.34㎡

5층 128.02㎡

6층 160.77㎡

7층 146.38㎡

8층 109.71㎡

옥탑1층 20.4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6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9.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375-61

대 57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577분의 57.83

감정평가액

254,000,000

회차

기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5.12.24

254,000,000

25,400,000

2회

2026.01.28

177,800,000

17,780,000

3회

2026.03.04

124,460,000

12,446,000

4회

2026.04.08

87,122,000

8,712,200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회도)로부터 2025

.05.07.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

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됨.